

# 한·중 FTA의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서민교(Min-Kyo Seo)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교수

김희준(Hee-Jun Kim)

경북외국어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글로벌경영전공 교수, 교신저자

## 목 차

- |                                      |          |
|--------------------------------------|----------|
| I. 서론                                | V. 결론    |
| II.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                  | 참고문헌     |
| III. 한·중 무역의 기술장벽 동향                 | Abstract |
| IV. 한·중 FTA을 위한 기술부문의 대응 방안<br>및 시사점 |          |

## 국문초록

본 논문은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 관련하여 예상되는 무역의 기술장벽의 현안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FTA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인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WTO의 주요 협정 내용 및 한국과 중국의 FTA 기술부문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중국과의 무역의 기술장벽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을 통보문 건수가 많은 “사람의 건강과 또는 안전의 보호”, “환경보호”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 “투명성” 등으로 도출하였다.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한국기업은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게 재정지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국제표준 활동의 역량강화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한·중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효율적이다. 중국의 지역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기술규제의 재·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주제어 : 한·중 FTA, 무역의 기술장벽, 통보문

## I. 서론

2012년 하반기 현재 글로벌 경제의 동향은 크게 미국의 둔화, 일본의 침체, 중국의 부상 등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특히 2008년 후반에 터진 리먼브라더스 사태 등으로 인한 미국의 금융 위기는 지구촌의 모든 나라의 경제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경기침체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재정절벽(fiscal cliff)<sup>1)</sup> 등으로 미국경제가 악화되어 미국이 세계경제의 중심에 서지 못할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 향후 세계경제를 주도하게 될 국가는 중국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고, 중국의 경제 상황의 중요도는 그 만큼 커질 것이다.

중국은 인구 약 13억 4,735만 명(2011년 기준)의 거대시장이며 GDP는 2011년 47조 1,564억 위안으로 2010년 대비 약 18.5%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자연재해와 위안화의 평가절상으로 정점에 이르렀던 경제성장률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sup>2)</sup> 또한 현재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중국의 대 유럽 수출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내수시장의 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반면에 중국은 2008년부터 행정관리 체제개혁의 심화, 세제 체제개혁의 심화<sup>3)</sup>, 금융 투자 체제 개혁의 심화, 국유기업 개혁 및 비공유제 경제발전의 추진, 요소시장 건설의 추진, 농촌 경제체제의 개혁, 자원 절약, 환경보호 메커니즘의 완비, 사회체제의 개혁 및 대외 경제체제 개혁의 심화 등으로 이런 경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리고 2012년에는 민자 유치를 통한 사업추진, 보조금지급을 통한 소비 장려, 금리인하정책 등으로 경제와 산업 각 분야에 변화를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1992년 한·중 수교 후 중국과의 무역교역량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전히 중국은 한국에 비해 노동력이 저렴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이 있어 한국기업에게는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 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무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FTA(Free Trade Agreement : 자유무역협정)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에 근접할 수 있으며, 그 동안 나타났던 무역수지의 불균형 및 현지 투자관련 마찰 등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 물론 중국과의 FTA 체결 시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농림수산업 분야에서 값싼 중국 농수산물의 유입 확대로 타격이 우려되고, 일부 품목은 관세양허에서 제외하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투자 등 중요 핵심 사안에 대해 중국이 제도개선이 소

1) 정부가 재정 지출을 감작스럽게 축소해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는 현상

2) 중국국가통계국. 2012

3) 2008년 1월 1일부터 정식 발효된 기업소득세법에 따라 과거 13% 혜택세율을 적용받던 외국인 투자기업은 국내기업과 동일한 25%를 적용받게 됨.

극적이어서 기대효과만큼 결과 도출이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수입 경쟁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의 기술장벽)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기술규제가 정당하게 활용되면 안전과 신뢰를 강화할 수 있어 소비자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입국의 자체적인 해석으로 WTO 회원국과의 상호 동의 없이 기술적 규제를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절차로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술규제는 교역대상이 되는 전 재화와 서비스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FTA 체결 시 강력하고 복잡한 기술규제를 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FTA 체결하는 과정에서 농수산물 못지않은 민감한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체결 협상 시 기술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내 산업의 피해를 줄이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은 FTA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기술장벽 동향을 분석하여 기술부문 협상에 있어서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

### 1. 무역 기술장벽의 의의 및 유형

#### (1) 무역 기술장벽의 의의

기술규정 또는 표준이란 정책당국 또는 민간표준기구를 중심으로 상품에 대한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을 설정하여 동 기술규격을 근거로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함으로써 상품의 생산 및 유통 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무역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은 상품의 기술표준의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상품이동에 대한 장애를 의미하며, 기술규정, 표준 및 특정 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적합성평가 절차 등이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한다.<sup>4)</sup>

4)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통합정보포털, WTO무역기술장벽, 2012. <http://www.knowtbt.kr>

일반적으로 기술규정은 인간과 동물 및 식물의 생명, 안전, 보건, 위생, 환경의 보호 또는 국가안보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하는 제품에 적용되며, 법적인 강제성에 따라 기술규정과 표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다자무역체제의 정착으로 인해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이 과다한 기술요건,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표준, 수출국과의 중복 검사 등의 수단을 통하여 자국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은 동경라운드에서 제정된 9개 MTN<sup>5)</sup>협정 중 하나로서 1980년 1월 1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80년 10월에 가입하였다.

기존의 기술장벽 협정은 114개 GATT 회원국 중 38개국 가입하여 협정 참여국들의 수가 미미하였고, 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관의 기술장벽 협정 이행의무가 확보되지 않았으며, 기술장벽협정의 적용 및 관할범위가 모호하여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 협정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유럽 등의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기술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많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보건 환경보호 등 삶의 질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도 관련된 기술장벽의 강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2) 기술장벽의 유형

무역의 자유화, 세계화로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무역장벽은 감축, 철폐되어 가고 있으나,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의 기술장벽관련 규제가 주요한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일반적인 무역장벽과는 달리 무역의 기술규제는 제품의 생산과정, 선적, 수입국의 통관과정 및 유통과정에서 소비자의 사용 및 폐기과정까지 전 단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기술규제는 기술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여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되어 재정되고 기존의 기술규제가 개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술규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기술규정, 표준 및 적법성 평가절차, 라벨링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s)은 규격, 형태, 디자인, 성능, 포장방식, 상품표시 부착 등의 제품의 특성과 생산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경우이다. 보건, 안전, 환경 등의 이유

5) 1973년부터 1979년에 걸쳐 이루어진 GATT체제 하의 다자간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MTN)을 말한다. 동경선언에 따라 협상이 시작된 데서 '동경라운드'라고 한다.

로 제정된 것이며 적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그 준수에 강제성이 있다. 즉, 표준에 맞지 않는 제품의 경우, 비록 시장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출시가 가능하나, 정부에서 제정한 기술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출시자체가 불가능하다. 기술규정은 인간의 생명, 안전, 건강보호 등을 위한 것이나 운영상 외국기업에게 불리한 점이 발생함으로써 기술장벽으로 나타난다. 수입품에만 적용되는 기술규정 또는 수입품과 국산품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는 기술규정에 의한 장벽과 합법적인 목적 수행을 이유로 기술규정을 적용하나 그 목적에 비해 정당성이 미약한 기술규정에 의한 장벽이 있다.

둘째, 표준(standards)은 규칙, 지침, 상품의 특성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방법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품질이나 색상 등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시장에서 반영한 것이다. 인정된 기관에 의하여 승인되고 수용여부가 자발적이어서 기술규정과는 달리 강제성은 없으나, 신뢰성, 안전, 건강, 환경 등과 같은 소비자의 선호에 따라 실질적인 강제성을 가지게 되므로 기술장벽으로 나타난다. 즉, 정부의 강제검사제도 운영 시 표준을 인용하거나 기술기준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기술장벽으로 변질될 수 있다.

셋째, 적합성평가절차(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CAP)는 기술규정과 표준을 잘 준수했는지 또는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완제품에 대한 시험 및 검사, 평가 및 검증, 인증 및 승인을 수행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절차이다. 종류로는 사실을 검토하거나 조사하여 판정하는 검사(inspection), 어떤 행위, 문서의 성립이나 기제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음을 공적 기관이 증명하는 인증(certification), 인증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인 인정(accreditation), 정당하거나 사실임을 인정하는 승인(approval), 검사하여 그 자격을 정하는 검정(verification) 등이 있다. 적합성평가절차는 중복적인 검사요구 및 검사절차상 과도한 시간 소요, 검사장비의 낙후, 검사인력의 부족, CCC마크(중국), JIS마크(일본), CE마크(유럽) 등 특정 인증마크 획득의무화 등으로 인해 기술장벽으로 나타난다. 특히 중국은 제조시설의 사전검사를 통한 품질면허 발급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검사절차 및 장비, 인력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

넷째, 라벨링(labeling)은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용역의 선택이 잘못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표시기준이다. 상품명, 용도, 성분, 재질, 성능, 규격, 가격, 용량, 허가번호 및 용역의 내용, 물품을 제조, 수입, 가공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 및 물품의 원산지,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경고사항, 제조 년월일, 품질보증기간 또는 식품이나 의약품등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그 유효기간 및 표시의

크기, 위치, 방법,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 및 처리방법 등을 표시한다. 특정 라벨 부착의 의무화는 특정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화 및 기술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하여 기술장벽으로 작용한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 라벨링제도로써 승용차 및 경트럭의 국산화를 표시를 의무화하여 외국기업의 경쟁력을 상실시키는 경우가 있다.<sup>6)</sup>

## 2. WTO/TBT 협정의 주요 내용

GATT체제의 동경라운드 MTN Code 중의 하나로 1980년 1월 1일 발표된 협정이다.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 장벽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검사, 인증제도, 규격 등을 새로 도입하거나 개정할 경우 국제기준 또는 국제관행을 준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1980년대에 TBT협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기술장벽과 관련한 통상마찰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UR협상의 결과 동경라운드체제에서 1995년에 출범한 WTO체제로 이관되었다.

특정 국가가 각종 표준(standard),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인증절차(certification procedure) 및 검사절차(inspection system) 등을 자국의 실정에 따라 까다롭게 운영할 경우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수출대상국의 표준 및 기술규정 요건에 맞도록 새로운 생산설비를 구비하거나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하는 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소비해야 되므로 이는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에 각국의 상이한 표준, 기술규정, 인증절차 및 검사절차 등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킴으로써 국제무역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TBT협정이 체결되었다. WTO/TBT 협정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이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포괄적인 원칙과 회원국들의 의무사항을 담고 있으며 기술규정 및 표준, 인증제도, 공식질의처 운영, 개도국 우대, 국제표준의 채택 강화, 분쟁 해결에 관련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WTO/TBT 협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WTO는 기술규정 및 표준에 관한 협정문 제2조 및 제3조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정부 등의 표준화기관에 의한 기술규정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는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기술규제나 표준은 제품의 특성은 물론 제품의 특성과 관련된 공정이나 제조방법도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TBT 제2조 8, 부속서 1의 기술규정)

6)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WTO/TBT(기술장벽) 의의 및 유형, 2006.



WTO 전신인 GATT의 동경라운드(GATT 제7차)의 표준규약에서도 기술규제나 표준은 품질, 성능, 안전 또는 규격 등 제품의 특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술규정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서는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따르고, 국제표준을 설정하는 데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타 회원국의 기술규정이 자국과 다르더라도 자국의 기술규정이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국의 기술규정과 동등한 것으로 수용할 것을 적극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TBT 제2조 7; 동등성 개념)

국제표준이 존재하지 않아 자국의 특정 기술규정을 도입할 때에는 투명성 유지를 위해 초기단계에서 간행물에 공표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에 있어서는 회원국들은 자국의 중앙정부 표준화기관이 TBT 협정 부속서 3의 공정 관행규약을 수용하고 준수할 것을 보장하도록 하고, 자국의 지방정부 및 비정부 표준화기관들로 하여금 이 규약의 수용 및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TBT 제4조, 부속서 3)

기술규정 및 표준의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해서는 최혜국대우, 비차별적원칙 및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며, 상품에 관하여 제출된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수수료 제반사항 등에서 자국을 원산지로 하는 동종 상품과의 형평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관련 국제표준화기관의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지침이나 권고사항의 수용 또는 개발에 기여하고, 자국의 특정한 적합성평가절차 도입계획에 대하여 초기단계에서 공표하며, WTO 사무국에 통보하여 회원국들의 의견수렴과 논의 및 논의결과의 고려해야 한다. 관련 요건의 공표와 발효 사이에 다른 회원국들의 적용을 돕기 위한 합리적인 시차를 허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TBT 제5조~제9조)

정보제공 및 투명성 절차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서 채택되거나 제안된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에 대한 다른 회원국 및 다른 회원국내의 이해당사자들로부터의 모든 합리적인 문의에 응답할 수 있고 관련 문서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 개 이상의 질의처(inquiry point)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TBT 제10조)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및 특별우대조치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은 요청이 있는 경우 기술규정의 준비, 국가표준화기관의 설립 및 국제표준화기구와의 참여, 규제기관 및 적합성 평가기관의 설립, 관련 기구 및 법률체계의 수립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고 상호 합의된 조건에 의하여 기술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TBT 제11조)

또한 회원국들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적용에서 개도국들의 개발, 재정 및 무역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개도국들의 수출에 불필요한 장벽을 설정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비록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발도상국들의 특정한 기술적인 면과 사회적인 여건과 개발의 필요성을 감안하고, 무역에 적절하지 않은 국제표준을 사용할 것을 기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TBT 제12조)

기술규정 및 표준 관련 제도, 컨설팅 및 분쟁해결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의 대표로 구성된 무역상 기술무역장벽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협정의 운영 또는 목적의 증진에 관한 협의를 위해 매년 적어도 한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며, 회원국들에 의해 부여된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TBT 제13조)

또한 WTO/TBT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된 협의와 분쟁해결은 WTO 산하의 무역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통고하고 이 기구의 주관 하에 진행되며, 분쟁해결양해에 의해 발전되어 적용되도록 하는 GATT 1944의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TBT 제14조)<sup>7)</sup>

### Ⅲ. 한·중 무역의 기술장벽 동향

#### 1. 한·중의 TBT 정책 방향

최근 5년 간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의 TBT 통보문 건수와 특정무역현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기술규제를 통한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우려하게 되며, 특히 현재 협상 중에 있는 중국과의 FTA체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국의 TBT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의 TBT에 관한 정책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살펴해보도록 한다.

##### 1) 한국

한국은 2008년에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기술관리사회에 포함되었고, 2009년에는 ISO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양쪽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표준 및 규제 분야에 대한 국가 정책적 관심이 높으며, 국제적 영향력도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지털 등 주요 분야에서 기술표준 제안 건수가 많고, 또

7) WTO,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2010. 재인용  
하태정 외,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정책연구2010-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해양에너지 분야에서도 신규 국제표준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술표준정책은 산업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녹색기술 표준화전략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녹색산업의 발전과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녹색 제품과 기술의 표준화를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탄소포집기술 등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2012년까지 폐기물 재활용 방법, 에너지효율등급 등의 표준 50여종, 그린에너지, 그린IT산업 등 녹색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표준 180여 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제품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적 체계가 새롭게 정비되면서 2009년 “제품안전기본법”이 수립되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이는 제품안전관리기반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제품안전 종합계획 수립, 위해 정보 언론공개 및 자발적 리콜 활성화, 제품사고조사센터 지정 및 제품안전 전담기관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신제품의 인증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인증제도 규제 정비 등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되는 제도적 정비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산업 발전 측면 외에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해 생활표준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생활표준화과제를 발굴하여 2012년까지 가전 전용 리모컨 표준화, 모바일 기반 금융거래 보안 표준화, 의료기기 표준화, 휴대폰 배터리를 표준화 등의 시책이 포함되는 “친서민 생활표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에 매년 기술규제 내용을 통보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TBT가 주요한 통상 쟁점으로 부각됨에 따라 해외의 기술규제 도입 동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WTO에 제출되는 각국의 통보문 이외에 해외 진출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협회, 각국 주재 대사관의 상무관 등을 통해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업종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외의 TBT 현황과 내용,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특히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규제 제반의 내용을 포함한 TBT 통합정보포털 사이트(<http://www.knowtbt.kr>)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기업이 해외 TBT를 원활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외국의 신설제도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WTO, OECD 등의 국제기구에도 우리 측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한국 판매용 휴대폰에 대한 WIPI 소프트웨어 플랫폼 탑재 의무를 해제하여 다수의 외국산 휴대폰이 국내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기술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리튬이온 배터리안전성 및 냉장고 에너지 효율성 인증과 관련하여 국내기관은 물론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도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sup>8)</sup>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기술규정정책은 빠른 속도로 선진화를 추진 중이며, 전 세계 자유무역주의 체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에 다른 국가로부터 TBT로 지적되어 향후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일부 규제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sup>9)</sup>

## 2) 중국

중국은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2001년 WTO에 가입한 후 자국의 기술표준을 국제기준에 조화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신규 기술규제 도입 및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WTO 회원국 가운데 기술규제 통보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이다.

그리고 2002년 이후 매년 1,000여 건 이상의 국가표준이 수정 또는 제정되어 왔으며, 매년 그 건수가 증가되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 신소재, 바이오, 기능성 섬유 등에 대한 국가표준이 제정되고 있다. 2007년 중국 섬유산업협회에 의하면, 향후 5년 간 중국 섬유 업체는 신소재 표준, 바이오 섬유 표준, 기능성 섬유 표준, 중점제품 표준을 중심으로 약 140개의 새로운 표준이 제정될 예정이며 2000년 이전에 제정된 표준 300여 개에 대해서 수정작업을 진행 중이다.<sup>10)</sup>

최근 주요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기술 규제 및 표준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중국은 적합성평가 표준체계의 수립을 위해 2003년 “전국 인증인가 표준화 기술위원회”를 설립하고 적합성평가의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국제표준 업무 대응팀을 마련하여 국제표준 수립 과정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적합성 평가 표준의 국제 기준 부합도가 2003년 20%에서 2010년에는 거의 100%에 도달하였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TBT로 간주되고 있는 중국강제인증제도(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sup>11)</sup>가 최근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2009년에 중국 정부는 인증과정을 간결화하고 인

8)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2010.

9) 하태정 외,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정책연구2010-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58-62, 2010.

10) 양평섭 외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7-08, 2007

11) 중국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모든 제품과 중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및 부품에 대해 강제 인증에 해당되는 품목은 반드시 중국국가 표준에 준하여 안전 및 품질 인증을 받도록 한 제도. CCC 마크를 받아야 중국 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증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기업이 집행하는 데 편하고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등록변경 절차 간소화, 검사절차의 유연화, 동일 부품에 대한중복 검사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법을 개정하였다.

중국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최근 에너지 보존제품<sup>12)</sup>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에너지보존 인증제품 인증마크를 부여하며 정부기관은 에너지 보존 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자국 제품의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외국의 TBT 완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외국의 TBT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에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General Administration of Quality Supervision, Inspection and Quarantine: AQSIQ)을 주무 기관으로 하는 “전국 무역기술조치부서간 연석회의”를 설립하였다. 이 기관은 외국의 TBT 현황을 신속하게 조사하여 기업, 협회 등에 배포하고 TBT 관련 웹사이트([www.TBT-SPS.gov.cn](http://www.TBT-SPS.gov.cn))에 게재하며 각종 정보 및 업계 의견을 토대로 자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의 TBT에 대해 통상 교섭을 진행한다.

중국의 기술규제정책은 경제발전과 함께 빠르게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다. 특히 자국의 관련 정책을 국제기준에 부합시키기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정책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수출의존도가 심화되고 외국의 TBT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향후 상대국에 대한 통상압력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sup>13)</sup>

## 2. 한·중 양국 간 TBT 동향

우리나라의 TBT 통보문 건수는 WTO가 출범한 1995년부터 시작하여 2011년 까지 전체 444건에 이른다. 반면에 2001년 WTO에 가입한 중국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총 869건을 기록하고 있다.<sup>14)</sup> 이 내용만 보더라도 중국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통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통보문 건수 중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표1-1>에서 살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규제가 총 259건으로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소비자 정보제공, 상품표시 부착” 85건, “기만적 행위방지

12) 해당 종류의 제품과 관련된 품질, 안전 등의 표준 요건에 부합되고, 출시 사용 중 동종 제품 또는 동일한 기능의 제품과 비교하여 에너지 효율 또는 에너지 소모지표가 국제 선진수준과 동일하거나 근접한 제품.

13)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제7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자료, 2010. <http://www.knowtbt.kr> 재인용 하태정 외, 전제 논문.

14) WTO,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2012

및 소비자보호” 59건, “새로운 국내법규 및 기술의 채택” 47건 순으로 기술규제가 많았다. 반면 “환경보호”, “품질요건”,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규제는 그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나머지 “국가안보요건”,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무역원활화”, “무역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에 대한 기술규제는 단 한건도 기록되지 않았다.

〈표1-1〉 한국 및 중국의 목적별 TBT 통보문의 현안 및 건수(1995-2011)

한 국		중 국	
목 적	건수	목 적	건수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	259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	641
consumer information, labelling 소비자 정보제공, 상품표시 부착	85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환경보호	249
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ses and consumer protection 기만적 행위방지 및 소비자 보호	59	protection of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56
adoption of domestic law 새로운 국내법규 및 기술의 채택	47	prevention of deceptive practises and consumer protection 기만적 행위방지 및 소비자 보호	49
other 기타	40	adoption of domestic law 새로운 국내법규 및 기술의 채택	29
harmonization 국제표준과의 조화	21	other 기타	25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환경보호	21	consumer information, labelling 소비자 정보제공, 상품표시 부착	17
quality requirements 품질요건	4	national security requirements 국가안보요건	5
protection of animal or plant life or health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2	harmonization 국제표준과의 조화	3

주1 : 통보문 기술규제 내용이 명확하게 목적별 현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사한 현안에 포함하여 집계하였음.

주2 : 통보문 기술규제 내용이 여러 가지일 경우에는 각각의 목적별 현안으로 집계하였음.

자료: WTO,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2012. <http://tbtims.wto.org/web/pages/search/stc/Search.aspx>.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통합정보포털, 2012. <http://www.knowtbt.kr>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규제 건수가 총 6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경보호” 249건,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 56건, “기만적 행위방지 및 소비자보호” 49건 순으로 많았다. 반면 “소비자 정보제공, 상품표시 부착”, “국가안보요건”, “국제표준과의 조화”에 대한 기술규제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중국 또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무역

원활화”, “무역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에 대한 기술규제는 한건도 기록되지 않았다.<sup>15)</sup>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목적별 특징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건수가 적었던 “환경보호”와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와 같이 소비자 권익보호보다는 자연보호 목적의 기술규제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과 비교하여 볼 때 “소비자 정보제공, 상품표시 부착”과 같이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기술규제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1-2> 한국 및 중국의 유형별 특정무역현안 건수(1995-2011)

유 형	한국	중국
further information, clarification (추가정보 및 설명요구)	20	30
unnecessary barrier to trade (불필요한 무역장벽)	14	21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표준과의 조화)	12	20
transparency (투명성)	11	19
rationale, legitimacy (합법성 및 근거요구)	11	17
discriminati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차별적 조치)	8	10
time to adapt “reasonable interval” (합리적인 유예기간)	6	9
technical assistance (기술원조)	0	0
other, text (기타)	4	6

자료: WTO,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http://tbtims.wto.org/web/pages/search/stc/Search.aspx>

### 3. 한·중 간 예상되는 TBT 주요 쟁점 사항

향후 한국 및 중국 간에 예상되는 주요 쟁점 사항은 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규제하려고 하는 목적별 현안에 초점을 맞추어 점검해 보아야 한다. <표1-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WTO의 TBT 위원회에 통보한 것들 중 특히 그 건수가 많은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와 “환경보호”에 대한 기술규제가 쟁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목적별 통보 건수에도 있고, <표1-2>와 같이 양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제기된 특정무역현안 중 건수가 많은 “국제표준과의 조화”와 “투명성” 부분도 검토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국제표준과의 조화”와 “투명성” 부분은 양국 간의 특정무역현안을 나타낸 <표

15) WTO,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2012

1-3>에서의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에 건수가 가장 많은 “추가정보 및 설명요구”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기술규제의 쟁점 사항이기 보다는 일반적인 논의 사항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양 국가의 목적별 통보문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 “환경보호”와 특정무역현안인 “국제표준과의 조화”, “투명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사람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는 “제품안전강화” 측면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에 “제품안전기본법”을 국회에 의결하여 제품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를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안전기본법”은 전 산업에 걸쳐 시행되고 있어 안전과 관련된 우리나라 TBT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관련 정보를 평가하여 화학물질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해에 대한 사전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1년 3월에 이를 WTO에 통보하였다.

이에 중국은 2011년에 동 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하고, 평가대상물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과 평가대상 물질 제조·수입량 기준을 0.5톤에서 1톤으로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였다.<sup>16)</sup> 중국은 자국 제품 안전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완구, 폭죽, 라이터, 전자제품 등 주요 소비자 제품에 대한 수출검사 및 관련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제품안전강화와 관련한 중국의 TBT 건수는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환경보호” 사항은 “기후변화 대응관련 기술규제강화” 측면과 연결된다. 이 부분에 관련하여서도 한·중 양국 모두 기술규제가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경우 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녹색산업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녹색기술 표준화 추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중국 또한 최근 들어 환경관련 TBT 통보문의 건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07년 3월에 발효된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법(China RoHS)”과 무관하지 않다. 이 법안은 전자 분야에서 전자·정보제품 RoHS 6대 물질 함유를 표시하는 것으로 EU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과 흡사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2010년 7월에 규제 적용 대상을 완제품에서 완제품을 포함한 원재료 및 부품으로 확대하는 “전자전자제품 오염통제 관리 방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이를 WTO에 통보하였다.<sup>17)</sup>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s, PBDEs 등과 같은 6대 유해물질을 제한하되, 이 중

16) 장용준 외,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11-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98-101, 2011.

17) WTO Notification G/TBT/N/KOR/305.



표준관리목록에 해당하는 제품은 전기전자제품 오명방지 관리를 위한 국가인증시스템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WTO/TBT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에 제3국의 성적서도 인정하거나 한·중 시험기관 간 성적서 상호 인증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sup>18)</sup>

이와 같이 환경관련 TBT 경우에는 각국 고유의 자연적, 지리적 특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므로 무역 분쟁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국제적 기준이 명확한 “소비자 정보제공, 상품표시 부착”관련 기술규제보다 무역상대국의 수출에 무역장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중 FTA 기술부문의 협상에서 중국의 기술규제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더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표1-3〉 한국에서 중국 및 중국에서 한국의 유형별 특정무역현안 건수(1995-2011)

유 형	한국→중국	중국→한국
further information, clarification (추가정보 및 설명요구)	5	2
unnecessary barrier to trade (불필요한 무역장벽)	3	1
international standard (국제표준과의 조화)	3	1
transparency (투명성)	5	1
rationale, legitimacy (합법성 및 근거요구)	3	0
discrimination,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차별적 조치)	2	0
time to adapt “reasonable interval” (합리적인 유예기간)	2	0
technical assistance (기술원조)	0	0
other, text (기타)	3	1

자료: WTO,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http://tbims.wto.org/web/pages/search/stc/Search.aspx>

“국제표준과의 조화” 사항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에 ISO의 기술관리이사회에 포함되었고, 2009년에는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영국, 독일, 캐나다와 함께 ISO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ISO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화 영향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향후 국제표준화 활동과 표준외교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지털 분야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해양 에너지 등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18) 장용준 외, 전계 논문.

전망이다.

중국은 ISO 상임이사국이라는 위치로 국제표준화 선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000건의 자국 기술규제 및 표준을 국제표준에 반영시킨다는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국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세계시장에서 수출에 대한 자국의 확고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현재 중국의 주요 경제정책 중 하나로 진행되고 있다.<sup>19)</sup>

“투명성” 사항은 새로운 기술규정의 제정과 기존의 기술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현안이 국제표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다른 회원국의 통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이를 WTO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WTO/TBT 협정문에서는 회원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60일에서, 가능할 경우 90일 이상까지의 기간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TBT위원회에서는 기술규정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는 질의처를 설치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부처에서 외교통상부를 통해 통보를 요청하면, 외교통상부에서는 WTO 사무국에 통보를 하고, 사무국에서는 회원국으로 통보문을 보낸다. 반대로 다른 회원국에서 우리나라에 TBT를 통보할 때는 WTO 사무국을 거쳐서 전달된다.

중국의 경우에는 기술규제를 통보할 때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가표준화관리국 또는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이 제안하고 중국 상무부가 WTO 사무국에 통보하며 사무국에서는 해당 회원국으로 통보문을 보내는 과정을 거친다.

한·중 양국이 상대국의 기술규정 변화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의 전달 및 상호 공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 IV. 한·중 FTA을 위한 기술부문의 대응 방안 및 시사점

### 1. 한·중 FTA을 위한 기술부문의 대응 방안

한국과 중국 간에 FTA 체결을 위해 다루어야 할 사항 중 기술부문에 대한 것들이 협상에 있어서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주요 쟁점 사항을 사전에 잘 파악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앞의 IV장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쟁점화될 것으

19) 하태정 외,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정책연구2010-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67-68, 2010.

로 예상되는 기술부문의 현안들을 중심으로 기술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에 따른 제품안전관련

이 부분은 한국이나 중국 양 국가가 WTO/TBT위원회에 통보문을 가장 많이 보낸 목적별 사항이다. 향후 인체안전의 인식이 더욱 커지면서 기술규정의 제정도 세분화되고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규정이 제정되는 목적 중 하나에는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한 제품안전은 양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유는 양 국가의 기술규정이 상호 다르며 적용하는 방법도 상이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도 보호무역의 효율적인 활용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무역장벽이 된다. 또한 중국의 제품안전과 관련된 기술규정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협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관계로 일부는 국제 방식과 다른 중국의 독자적인 기술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방식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유사한 다른 국가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반면에 최근 중국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식품 등 안전문제에서 중국의 제조업은 생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기본적인 표준의 요구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저렴한 중국산 장난감의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 우리나라도 EU나 미국의 기술규정을 참고하여 제품안전을 위한 중국 제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환경보호관련

중국은 환경오염 유발제품 또는 관련기술에 대한 규제성 입법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성 입법조치는 생산은 물론 금융, 수출부문 등에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고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제품 시장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기업은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 환경규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에 과징금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수출 및 판매금지 대상이 되어 시장진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를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제품개발에 성공하면 중국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

질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에게 재정지원, 세제혜택, 금융지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하여 환경관련 설비 및 기술 분야의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또한 한국기업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배양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규제 강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기업도 환경보호를 환경규제 회피 방안을 마련하는 피동적 인식에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환경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및 사전대응이 필요하다. 환경규제 정보 및 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사전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환경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 3) 국제표준관련

우리나라는 국제표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0년 이후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제무역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는 국제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국제표준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그 당시 국내기술이 많이 낙후되어 있어 초기에는 해외 자본의 직접투자를 통해 기술이전을 원하였다.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중국 직접투자로 인해 어느 정도의 기술수준이 향상되어 자국의 기술표준의 제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기술표준은 외국표준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았고, 국제표준의 참가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이다.

중국과의 국제표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먼저 국제표준화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TBT위원회에 대하여 보다 선제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아직 신설되지 않은 국제표준에 대해 국내 기술규정의 선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를 참조하여 자동차 작업반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러한 표준은 한·중 양국의 자동차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애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다. 이 작업반은 자동차 관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의 개발·이행 및 집행에 대하여 당사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한·중 양국과 그 영역의 이해당사자 간에 협력증대를 원활히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표준관련 원천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기술에 대한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 또한 기업이 기술표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비단 중국과의 협상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의 협상을 위해서도 국가표준화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준체계를 재검토하고 표준과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해야 하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모호한 내용은 객관성이 있도록 수정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 국제기준과 부합되어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규제절차를 개선해야 하며, 규제 기준치 시험방법에 논란이 있을 경우, 선진국 및 국제표준과 차이를 비교·분석하고 적합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sup>20)</sup>

국제표준활동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표준경쟁은 얼마나 많은 국가가 표준을 채택하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표준화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론과 실무를 동시에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산업체와 학계가 협력하여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4) 투명성 제고관련

한국과 중국 양 국가가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는 첫째, 한·중 양국이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보다 신속한 통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양 국가는 새로운 기술규제를 통보할 때 WTO/TBT위원회에 먼저 통보하고 이후에 회원국에 전달되기 때문에 정보교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첫째 방법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해당국이 WTO/TBT위원회에 통보문을 발송할 때 협상 당사국에도 동시에 그 내용을 보낼 수 있다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하여 쌍방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셋째, 정보가 불완전하여 상호 오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통보문 작성 요령을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통보문 작성 시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기존의 통보문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추가될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을 상대국에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중국은 지역이 광활하여 지역별 TBT 통보자문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각 지역별로 우리나라와의 무역교역량이나 품목의 통계가 다를 수가 있어, 중국의 지역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규제의 재·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20)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http://www.kats.go.kr>을 재인용.

하태정 외,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정책연구2010-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138-139, 2010.

의견 수렴기간이 짧으면 회원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무역분쟁의 소지를 남길 수 있다. 의견 수렴기간이 길면 상대국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이 기간이 짧으면 상대국에게 충분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게 되면서 상호 이해가 충돌하여 무역마찰로 비화될 수 있다.

##### 5) 중국 TBT 관련 정보의 수집관련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동향을 신속하고 상세하게 조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중국의 기술규제의 실태와 증가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이 국내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신규 기술규제가 국제표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 및 판단은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을 제기할 경우, 정당성 확보 및 명확한 근거 제시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중국에 제기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증대 효과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기술규제로 인한 국내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WTO/TBT위원회의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외교통상부 주중 대사관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통해 중국의 산업보호 조치 및 수입규제와 관련한 정보를 조기에 입수하여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6) 국내 질의처의 일원화관련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특정무역현안 제기될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하고 유용한 답변을 위해 국내 질의처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1997년에 WTO/TBT위원회는 회원국에게 기술규제에 대한 질의처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하나의 통합된 질의처를 가지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들은 표준, 기술규제, 적합성평가절차의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질의처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 기술표준원으로 질의처 역할이 나누어져 있어 정보공유 및 의견수렴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중국을 비롯한 해당국가의 특정무역현안의 제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의 3개의 질의처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 2. 시사점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하여 무역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WTO/TBT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통보문 건수와 특정 무역현안의 지속적인 증가는 각국이 기술규제를 통한 또 다른 형태의 보호무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가지게 한다. 특히 해외의존도가 심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는 기술규제가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시장인 관계로 중국과의 FTA체결은 명백히 필요한 협상이다. 그러나 이 체결이 우리나라 무역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지 혹은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와 대책 방안을 가지고 철저히 그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중국의 기술규제 건수가 200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FTA체결 협상시에 기술규제에 대한 현안들이 첨예하게 대두될 것이며 이를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대국인 중국의 기술규제 동향, 증가원인 및 국내수출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이 WTO/TBT위원회에 제출한 통보문에 대한 심층분석을 토대로 이들 신규 기술규제가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지, 아니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특정 무역현안들이 국내 관련기업들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쳐 실제 수출감소가 발생했는지의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 및 조사결과는 중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과의 기술규제 부분에 대한 관심과 이해의 제고가 필요하며, 앞에서 살펴 본 관련 대응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우리나라가 제기한 기술규제에 대한 특정 무역현안이 중국기업의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기술규제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기술규제가 국내에 진출한 중국기업들에게 무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장벽으로 작용했는지, 아니면 수출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 EU 및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기술규제 중 WTO 국제표준에 부합하고 기술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규정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필요할 경우에 국내에 도입해야 한다. 결국 최근 국제통상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TBT 사안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가 보다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TBT 추이와 특성을 잘 이해하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V. 결론

2003년에 미국의 증권회사인 골드먼삭스 그룹의 보고서는 2030년 무렵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을 밀어내고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를 전망한 “2005 세계 대전망 The World in 2005”에서 중국은 인도와 함께 21세기의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전망보다는 더 빠르게 중국은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국기업들은 지리적 근접성과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 인구 약 13억의 거대한 시장이라는 이점 때문에 앞 다투어 중국에 진출하였으며 외환위기를 맞아 다소 위축되었으나, 여전히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지하자원으로 인해 중요하고 매력적인 시장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이러한 무역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FTA 협상은 필요하며, 비록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어려운 과정을 예상하더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

본 논문은 현재 협상 중인 중국과의 FTA 관련하여 예상되는 무역의 기술장벽의 현안을 도출하고 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우선 FTA 무역 기술장벽의 이론적 배경인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고, WTO의 주요 협정 내용 및 한국과 중국의 FTA 기술부문의 동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중국과의 무역의 기술장벽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현안을 “사람의 건강과 또는 안전의 보호”, “환경보호” 및 “국제표준과의 조화”, “투명성” 등으로 도출하였다. 물론 다른 현안들도 논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통보문 건수가 많은 대표적인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였고, 이러한 도출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사람의 건강과 또는 안전의 보호”는 제품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 중국이 유사한 다른 국가의 인증을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배타적 기술규정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장난감과 같은 저렴한 중국제품에 대해서는 EU나 미국의 기술규정을 참고하여 제품안전을 위한 중국의 생산업체의 기술향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중국은 환경오염 유발제품 또는 관련기술에 대한 입법조치를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제품 시장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기업은 높은 수준의 환경규제에 충족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하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에게 재정지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국제표준과의 조화”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TBT위원회에 선제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신설되지 않은 국제표준에 대해서는 국내 기술규정의 선점이 필요하다. 또한 표준관련 원천기술의 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표준관련 중장기적인 전략의 수립과 국가표준화 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표준관련 규제완화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제표준 활동의 역량강화와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한·중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호 직접적인 통보망을 설치하면 효율적이다. 또한 상호 TBT위원회에 통보문을 보낼 때 FTA체결국에도 동시에 발송해 미리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통보문 작성 요령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의 지역통보자문센터와 유기적이고 협력적인 교류가 필요하며 기술규제의 재·개정 및 새로운 기술규제의 의견 수렴기간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상기의 대응방안 이외에 기술규제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술규제관련 정보가 신속하고 적절히 수집·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기술규제의 특정무역현안 제기를 신속하고 유용한 답변을 위해 국내 질의처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

본 논문이 기술부문의 전체 현안에 대해 대응방안을 고찰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상기의 내용과 같이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았다. 앞으로 중국과의 FTA체결 협상 시 상당한 어려운 과정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술부문의 현안들이 첨예하게 쟁점화될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 측면이 예상되더라도 거대 시장 중국과 제도적 무역활성화를 위해 끈기있는 노력과 인내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본다. 향후 보다 더 많은 FTA관련 연구가 필요하며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 정부나 관련기관들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 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고찰, 법무부, 2003
- 기술표준원, “TO/TBT 업무 매뉴얼: WTO/TBT 협정에 대한 이해 및 통보절차”, 2010
- \_\_\_\_\_, “한-EU FTA/TBT 협정 이행지침서”, 2010
-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 “WTO/TBT(기술장벽) 의의 및 유형”, 2006.
- 남상열, “무역상 기술장벽 분야의 WTO 논의동향과 대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남상열 외, 한-EU FTA와 기술표준, KISDI 이슈리포트 08-11, 2008
- 박주근 외 “WTO체제하에서 적합성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한국의 TBT 극복방안: 시험·교정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상학」, 제23권 제2호, pp.175~193, 2008
- 박형래, 「국제무역개론」, 도서출판 두남, 2009
- 삼성경제연구소, “한중 FTA 의의와 주요쟁점”, 2011.
- 양평섭 외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07-08, 2007
- 이용규 외, “정보통신분야 기술 장벽 제거를 위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지역무역협정상 관련조항 비교분석“, 국제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pp.794-819, 2007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FTA일반, 2012
- 장용준 외, “최근 WTO 회원국들의 TBT 동향과 정책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_\_\_\_\_, “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보고서 11-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98-101, 2011.
- 전병호 외, “표준 및 무역상 기술장벽(TBT)의 경제적 효과 및 대응방안”, 경상논집, 제30권 1호, pp.19-40, 2007
- 중국국가통계국. 2012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TBT통합정보포탈,  
\_\_\_\_\_, 제7차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 자료, 2010.
- 지식경제부, 중국협력기획단, 2012
- 하태정 외, “FTA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무역장벽 대응방안”, 정책연구2010-0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p138-139, 2010.

한승준, “무역기술장벽 대응방안으로서의 기술규제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학회학술대회, 2009

## 2. 외국문헌

Lux, N., and S.J. Henson. “The Impact of Food Safety and Quality Standards in EU Cheese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Food Economics, The University of Reading. 2000

Maskus, K. E., Wilson, J. S., and Tsunehiro Otuski “Quantifying the Impac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A Framework for Analysi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512, 1999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s, 2010

WTO, TBT IMS(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2012

\_\_\_\_\_, Annual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the TBT Agreement, 2012

Yue, C., Beghin, J., and Helen H. Jensen “Tariff Equivalent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 with Imperfect Substitution and Trade Cost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8(4). pp.947-960. 2006

## 3. Web Site

<http://www.mofcom.gov.cn>

<http://www.mofat.go.kr>

<http://www.mke.go.kr>

<http://www.kiep.go.kr>

<http://www.stepi.re.kr>

<http://www.kotra.or.kr>

<http://www.kita.net>

<http://www.seri.org>

<http://www.knowtb..kr>

<http://www.kats.go.kr>

<http://tbtime.wto.org/web/pages/search/stc/Search.aspx>

<http://www.ststd.gov.cn>

## ABSTRACT

# A Study on Countermeasures for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Min-Kyo, Seo\* · Hee-Jun,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situation of Technical Barriers of Trade(TBT) between Korea and China and analyze a pending issue such as a regular TBT notifications and specific trade concerns informed to WTO/TBT committee by Korea and China and seek the Countermeasures for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Generally, in case of a regular TBT notifications, “a protection of human health or safety” and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re drawn a main articles from TBT committee data. And in case of a specific trade concerns, “international standard” and “transparency” are drawn a important factor from the said data. Henceforth those kinds of articles shall be an issuable matters for negotiation of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mainly that as Countermeasures of Korea for Technical Barriers of Trade in Korea-China FTA, Korean government level requires to withdraw an exclusive technical regulation of China and supports to improve Chinese technology for safety of products. Korean enterprises should develop products to meet an environment regulation and Korean government should support finance incentive, tax incentive to enterprises. Besides, regarding new international standard it is necessary for Korean side to dominate a relative regulation.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secure a strength of capability and human resource for international standard activity. For improving a conveyance of notification information and transparency between Korea and China, it is efficient to establish a mutual direct network of notification.

**Key Words** : Korea-China FTA, Technical Barriers of Trade, TBT Notifications

---

\* Prof., Dept. of International Trade, Daegu Univ.

\*\* Prof., School of Global Business, Kyongbuk Univ. of Foreign Study.